

첨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

2018. 4. 3.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2장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등

제3조 감독대상 금융그룹	3
제4조 유사명칭사용 금지	4

제3장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제1절 대표회사의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

제5조 대표회사의 선정	4
제6조 대표회사의 업무 등	5
제7조 그룹 위험관리정책	5
제8조 그룹 위험관리체계	6

제2절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제9조 건전경영 기준	7
제10조 자본적정성	7
제11조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7
제12조 동반 부실위험	8

제4장 금융그룹의 감독

제13조 감독	8
제14조 검사	8
제15조 감독 협의체의 운영	9
제16조 금융그룹의 보고	9
제17조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보고 및 공시	10
제18조 그룹위험의 평가	10
제19조 건전경영지도 등	11
제20조 적용범위	12
제21조 규준의 이행	12
제22조 조치 권고사항	12
제23조 권한의 위탁	13

부 칙

제1조 시행일	14
제2조 유사명칭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14
제3조 감독대상의 지정에 관한 특례	14
[별표 1]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5
[별표 2] 금융그룹의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25
[별표 3] 금융그룹의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 및 위험집중 파악 등 관련 고려사항	29
[별표 4] 금융그룹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1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초안)

제정 2018. 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준은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규제대상 금융회사”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최상위 금융회사”란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4. “금융그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2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5. “복합금융그룹”이란 다음 각 목 중 2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말한다.
 - 가. 다음 각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여수신업”이라 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한정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이하 “보험업”이라 한다)
6.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7. “익스포져”란 금융회사의 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취득,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등 금융거래에 수반하는 모든 위험에 대한 노출액을 말한다.
 8. “위험집중”이란 거래상대방 위험, 신용위험, 투자위험, 보험위험 또는 시장위험 등이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산업 등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 또는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을 말한다.
 9. “내부거래”란 금융회사가 대주주(그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행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를 말한다.

제2장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등

제3조(감독대상 금융그룹)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이 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이하 “감독대상 금융그룹”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할 것
 2.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일 것
 3. 금융그룹에 규제대상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구성된 경우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속하는 경우
 3.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금융그룹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은 제외한다.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금융회사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회사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 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4. 그 밖에 금융그룹 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 · 자기자본의 비중,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이 규준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실익이 적은 경우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제1항제2호의 5조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그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로부터 3년간은 해당 기준을 4조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금융그룹의 신청에 따라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을 새로 지정하거나 감독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새로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의 경우 그 지정된 날부터 2개 월간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사명칭사용 금지) 감독대상 금융그룹 및 제3조제2항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금융그룹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금융그룹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제1절 대표회사의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

제5조(대표회사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함께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이하 “소속 금융회사”라 한다) 중 최상위 금융회사로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회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금융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2. 최상위 금융회사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융그룹이 최상위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소속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대표회사의 업무 등) ① 대표회사는 그 대표회사가 속하는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8조에 따른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3.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고 · 공시 등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대표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위험관리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소속 금융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대표회사의 자료제출 또는 위험관리조치의 이행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그룹 위험관리정책) ①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이하 “그룹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 · 점검하여야 한다.

1.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그룹의 제반 금융위험에 대한 인식·측정·감시·통제에 관한 사항
 3. 소속 금융회사, 사업영역, 거래권역 등 분야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소속 금융회사간 또는 동일 기업집단 내 금융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소속 비금융회사”라 한다)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금융그룹의 주요 위험 변동상황에 대한 종합적 인식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②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그룹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그룹 위험관리체계) ① 제7조에 따른 그룹 위험관리정책 및 그룹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이 규준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표회사 이사회(의)회를 거쳐야 한다.

②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제1항에 따른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 위험관리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그룹 위험관리기구는 소속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의회(이하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대표회사가 아닌 다른 소속 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등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그룹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 관리책임자

④ 그룹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위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절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제9조(건전경영 기준)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금융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그룹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본적정성) ①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그룹 수준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금융위험의 전이 가능성
2.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3. 계열사간 내부거래 또는 금융위험의 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4.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하 “동반 부실위험”이라 한다)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그룹 위험요인

③ 제1항의 자본적정성의 구체적인 기준과 산정방법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①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중요한 내부거래에 관하여는 「상법」 제39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금융회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는 “중요한 내부거래”로 본다.
- ③ 금융위원회는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별표 3에서 정하는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의 측정 및 평가 기준
2.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의 허용 한도 및 한도초과분에 대한 추가 자본의 적립 기준

제12조(동반 부실위험) ①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인식·평가·감시·통제하여야 한다.

- ②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동반 부실위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주주 및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익스포져
 2. 그룹 내부거래에의 의존도
 3. 대주주 및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의 적정성
 4. 소속 기업집단의 대외 평판위험 등 기타 운영위험

제4장 금융그룹의 감독

제1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이 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표회사에 대하여 그룹 위험관리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검사) ①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회사에 대하여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금융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에 대하여 소속 금융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간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이 규준에 따른 감독에 따라 파악된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감독대상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상 보완점에 대하여 협의한다.

- 제16조(금융그룹의 보고)** ①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아닌 금융그룹이 제3조제1항의 감독대상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그룹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금융회사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소유 현황,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는 금융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최상위 금융회사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로 한다)가 동일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이행한다.

제17조(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보고 및 공시) ①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매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3월 이내에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
2.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보고·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공시한 경우에는 대표회사에 정정보고·공시 또는 재보고·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작성 방법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그룹위험의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그룹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그룹위험 실태평가”

라 한다)하고 그룹경영의 건전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2. 제10조에 따른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3. 제11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의 적정성
4. 제12조에 따른 동반 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

③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그룹위험 실태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룹위험 실태평가의 시기,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본의 적립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건전경영지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그룹위험 실태평가 결과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적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이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그룹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2. 그룹 내부거래 축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3.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4. 금융위험의 전이 가능성 있는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출자·자금거래 관계의 중단 또는 해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제1항의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그룹 위험관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그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2.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업만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의 전환
- ③ 제1항에 따른 그룹위험 관리실태의 분석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0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는 소속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2. 이 규준이 감독하고자 하는 금융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금융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이 규준의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규준의 이행)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이 규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 이내에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조치 권고사항)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한다)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룹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보고 · 공시 또는 재보고 ·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8.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2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지정
2. 제3조제4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및 감독대상의 제외
3. 제3조제5항에 따른 통지
4.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회사의 선정
5.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회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판단
6.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청의 접수
7.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8.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9.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 · 공시 및 재보고 · 공시의 요구
11. 제17조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설정
1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감독

13. 제20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및 적용의 제외 결정
14. 제21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15. 제22조에 따른 권고

부 칙(2018. 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1조 및 제22조 중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준의 근거 법률이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준 시행 당시 감독대상 금융그룹 및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그 명칭에 금융그룹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금융그룹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준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감독대상의 지정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가 제3조제1항에 따라 감독대상인 금융그룹을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규준 시행 후 최초의 지정일은 이 규준 시행일로 한다.

[별표 1]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그룹 위험관리기구

가.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대표회사가 위험관리기구로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이사회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금융그룹의 기본적 정성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통합위험(금융그룹이 보유한 유형별, 조직별 위험을 그룹 차원에서 비교 가능한 수치로 통합한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유형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룹 위험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4) 금융그룹의 통합 위기대응분석 및 비상계획 마련에 관한 사항
 - (5) 통합위험 관련 주요사항의 보고 및 공시항목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표회사 이사회 또는 그룹 위험관리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3)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4)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선했던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험관리위원회(대표회사가 위험관리기구로 위험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대표회사는 사외이사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 관련 연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연수를 받아야 한다.
- 2)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그룹 위험관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보수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 3)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이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4)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금융그룹 및 소속 금융회사별로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그룹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룹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6) 그룹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표회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한 진행 현황
 - (2)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상태 및 한도관리 현황
 - (3)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 (4) 그룹 위험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 (5) 그 밖에 대표회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그룹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권한을 그룹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 위험관리책임자(대표회사가 위험관리기구로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대표회사 이사회 보좌
- (2) 대표회사 이사회에 결의 또는 보고 안건의 부의
- (3) 외부환경과 그룹의 위험 부담정도에 비추어 그룹 위험정책 및 전략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 (4)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 관련 주요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파악된 사항을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의 운영
- (5) 환경변화 및 경영전략에 맞춰 그룹 위험관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위험관리 제규정 또는 절차 등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
- (6) 그 밖에 그룹 위험관리를 위해 대표회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평가권한,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간 지휘·보고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그룹 위험관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관리책임자는 이 규준, 대표회사 이사회의 결의·지시사항 등에 근거하여 소속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하거나 그룹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정책 및 전략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라. 그룹 위험관리부서

- 1) 그룹 위험관리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위험관리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 2)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부서는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관련 중요사항을 그룹 위험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간 업무분장

가. 위험 통제

- 1) 대표회사는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한도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 금융회사는 이에 부합하는 한도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2) 금융그룹은 위험 특성의 변화가 자기자본 필요액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 3)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위험통제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1)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한도 설정 및 내부자본 배분 등 위험관리 관련 목표의 부여 및 이의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2)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평가 및 검사
 - (3)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 측정모델 등에 대한 적합성 검증
 - (4)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업무 및 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 (5) 그 밖에 그룹위험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4) 대표회사는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체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보고 및 의사전달체계

- 1)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소속 금융회사와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간 위험 관련 사항에 대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통합위험의 측정 및 관리

가. 위험의 측정 및 관리대상

- 1) 대표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속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보험·신용편중(지역별, 산업별, 차주별, 거래상대방별, 상품별 등)·평판·전략위험 등 금융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중요위험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 2)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간 또는 소속 금융회사와 소속 비금융회사간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 3) 대표회사는 1) 및 2)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 등으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중요위험이 있는 경우 정성적인 기법 등을 이용한 적절한 관리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4) 대표회사는 위험 측정 및 평가결과,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험 유형별 한도를 설정하거나 경영의사결정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기타 위험관리

- 1) 대표회사는 특정 소속 금융회사 및 대주주로 인한 위험이 다른 소속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 (1) 그룹 내 소속 금융회사간 신용공여 또는 불량자산 거래에 대

한 검토

- (2) 소속 금융회사간 공동출자를 통한 신사업 진출, 소속 금융회사간 공동 상품개발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사전검토
 - (3) 그룹 내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펀드, 보험, 신탁 등) 위탁판매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예: 펀드비중 설정)
 - (4) 특정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등에 따른 평판위험의 전이에 대한 관리방안
 - (5) 동반 부실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 2) 대표회사는 1)에 따른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금융회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계

- 1) 내부자본적정성은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위험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에 대한 평가결과, 위기상황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그룹이 자체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소요 자기자본을 말한다.
- 2)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 특성 및 영업규모 · 범위 · 복잡성 등에 적합한 그룹 차원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험의 인식 및 여유자본의 확보

- 1) 대표회사는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신용 · 시장 · 운영 · 금리 · 보험위험 등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대표회사는 별표 2에 따른 금융그룹의 필요자본 합계액보다 적정한 규모의 여유자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이해상충의 관리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간 또는 소속 금융회사와 대주주(금융회사를 제외한다)간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현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적정한 방침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6. 위기상황 대응체계

가. 위기관리체계

- 1) 대표회사는 그룹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그룹의 공통된 위기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그룹 차원의 기준을 소속 금융회사에 제시할 수 있다.
- 2) 소속 금융회사는 대표회사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하여 자체 위기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3) 그룹의 위기관리체계는 조기위험감지, 영향분석, 위기상황단계 결정, 사후조치 실행, 보고 및 피드백 등의 프로세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 4)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의 위기관리체계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위기대응조직

대표회사는 2개 이상 소속 금융회사가 대표회사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위기상황단계에 있는 경우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위기대응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위기대응방안 및 조기경보체제

- 1) 대표회사는 그룹 전체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룹 차원 또는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위기상황의 조기감지를 위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대표회사는 조기경보체제 구축시 시장, 신용, 유동성 및 금리위험 등 위험 유형별로 또는 종합적인 위험에 대하여 위기유발 요인을 설정하여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조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통합 위기상황분석

- 1) 통합위기상황분석은 그룹 차원에서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소속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기법을 말한다.
- 2) 대표회사는 연 1회 이상 식별된 주요위험에 대해 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 및 대응방안을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소속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대응방안을 당해 회사 경영진에 보고하고 대표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대표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그룹 차원의 위험성향(자기자본 대비 위험 부담수준 및 감내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등 위험의 수용 정도에 대한 경영진, 이사회, 주주 등의 판단을 말한다) 및 위험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통합 위기상황분석은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금융그룹의 여건에 맞게 수행한다.

- (1) 경제·금융 및 여타 경영환경 분석
- (2) 적절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 (3) 위기상황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 (4) 위기상황 분석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 (5) 위기상황 시나리오와 분석모형의 겸증 및 수정·보완

마. 비상계획

- 1) 대표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동성 위기 단계별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룹 차원의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정책 및 전략
 - (2) 비상시 사용 가능한 자금조달원 및 확보 가능한 자금규모에 대한 추정지
 - (3) 대응절차에 대한 우선순위 및 승인절차
 - (4) 비상계획에 대한 실시 권한 등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 (5) 위기대책반 운영(담당부서, 담당자, 외부접촉 창구 등)에 관한 사항 등
- 2)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비상계획을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하여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위기관리체계의 정기적 점검

- 1) 소속 금융회사는 위기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기위험감지 및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위기관리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대표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표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위기관리체계의 조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금융회사는 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대표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

금융그룹의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총 칙

가. 금융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은 소속 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대표회사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그룹의 최상위 금융회사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인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금융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을 제3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자본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irc \text{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 순합계액}}{\text{필요자본 합계액}} \times 100$$

2.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산출

자기자본 순합계액은 각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산정한 소속 금융회사간 출자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가. 자기자본의 산정

(1) 소속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한 자본 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

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2) 금융관련법령에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자기자본 =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 무형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3) 소속 금융회사가 다른 소속 금융회사의 종속 금융회사이고, 지배 금융회사인 다른 소속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1)에 따라 산출된 지배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 종속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기자본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4) 보험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 제3호나목에 따른 연결대상회사를 기준으로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관계 보험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등의 자기자본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관계 보험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등은 (1)에 따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5)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경우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3-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영업용순자본을 의미한다.

나. 금융계열간 출자액 등 산정

- (1) 소속 금융회사간에 보유한 보통주 주식 및 보통주 주식 외에 해당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소속 금융회사간 거래액(장부가액으로 한다)
- (2) 소속 금융회사가 소속 비금융회사를 경유하여 동일 또는 다른 소속 금융회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 출자 금액
- (3) 해당 금융그룹 외의 회사와 자본증권 등을 상호보유하는 경우로서 금융그룹 내에 실질적 자본유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액(상호보유한 자본증권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가목(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본적정성 계산시 다른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액 등이 이미 제거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합산금액에서 제외한다.

3. 필요자본 합계액의 산출

필요자본 합계액은 각 소속 금융회사에 대하여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필요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가. 소속 금융회사의 필요자본은 해당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과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으로 한다.

나. 금융관련법령에서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 금융회사의 필요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circ \text{필요자본} = [\text{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외자산 포함)}] \times 8\%$$

다. 소속 금융회사가 다른 소속 금융회사의 종속 금융회사이고, 지배 금융회사인 다른 소속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목에 따라 산출된 지배 금융회사의 필요자본에 종속 금융회사의 필요자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속 금융회사에 대한 필요자본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라. 보험회사의 경우 필요자본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 제3호나목의 연결대상회사를 기준으로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필요자본(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관계 보험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등의 위험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관계 보험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등은 가목에 따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경우 필요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3-1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위험액에 같은 규정 제3-6조제2호에 따른 필요유지자기자본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바.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액

사. 제18조제4항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액

[별표 3]

금융그룹의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 및 위험집중 파악 등 관련 고려사항(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의 파악 · 측정 · 감시 · 관리에 있어 대표회사가 고려할 사항

가. 금융그룹의 소유 · 지배구조, 내부거래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의 지역별 분포,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거래 여부

나. 금융그룹으로의 위험의 전이 가능성

다. 개별 금융업 규제의 회피 가능성

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마.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 및 유동성 수준 등

2. 위험집중의 파악 · 측정 · 감시 · 관리에 있어 대표회사가 고려할 사항

가. 금융그룹 지급여력 및 유동성 수준

나. 특수목적회사, 외국 법인 등을 포함한 금융그룹의 자산 · 자본규모, 출자관계의 복잡성

다. 금융그룹의 구체적인 위험관리정책과 소유 · 지배구조

라. 금융그룹의 위험의 분산 정도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마. 금융그룹의 지역별, 영업부문별 등 활동의 다양성

바. 위험요인간 관계, 상호작용 및 상관관계

사. 금융그룹으로의 위험의 전이 가능성

아. 개별 금융업 규제의 회피 가능성

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차. 위험의 수준 및 크기 등

[별표 4]

금융그룹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제17조제1항 관련)

1. 금융그룹이 보고 및 공시를 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가.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

나. 그룹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라. 금융그룹 전반 또는 소속 금융회사간 위험의 전이, 집중, 상호연계성 등 평가 결과

마. 금융그룹의 거래상대방별, 지역별, 산업별 등 위험집중에 대한 파악 및 평가 결과

바. 내부거래 정책, 대상 및 현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속 금융회사의 국가별, 지역별, 산업별, 상품별, 소속 금융회사별 및 소속 비금융회사별 세부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 등을 포함한다.

사. 금융그룹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아. 금융그룹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자. 금융그룹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통합위험의 유형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차. 소속 금융회사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익스포져에 관한 사항

카. 소속 금융회사간 또는 소속 금융회사와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
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

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소속 금융회사 및 임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파. 주요 소송 현황 등

2. 새로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이 지정일부터 최초로 보고 및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나목, 사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과목에 한정하여 보고 및 공시를 할 수 있다.